

전기용품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중국에서 프린터를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나, 동일 중국 제조기업이 프랑스에 수출한 프린터를 국내 모업체가 수입하여 저가로 판매하여 국내시장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입한 제품과 프랑스로 수출한 제품의 모델명은 동일하지만 각 국가의 안전인증만 받고 있으며, 기타 부품 및 a/s 부품 등은 상이함. 해외 제조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았으면 수입업체가 별도의 안전인증 없이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한지?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은 제조업체(해외제조자 포함)의 허락 없이 아무 수입업체가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모델별로 제조자가 받는 것이며, 인증된 제품이 국내로 수입될 경우 수입업자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우리나라에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모델명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프랑스 등 다른 나라 수출을 위해 제품의 전원부 구조·부품 등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과 다르게 제조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전기용품으로 간주됨.

Question

OEM 방식으로 납품을 받아 판매를 할 경우 제조원을 OEM 업체로 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판매를 하는 업체를 제조원으로 표기해도 무방한지? 혹시, 정식으로 표기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제조자의 표기 대상품목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OEM 방식으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체를 표시하는것은 아니며, 전기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즉, OEM 제조업체를 제조자명으로 표기해야 함.